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추세와 한국의 선택

한 동 호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2-15

최근 한국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지난 2월 중순부터 불거진 중국내 탈북자 문제와 중국정부의 강제송환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움직임에 힘입어 증폭되었다. 국회의원의 단식과 일부 연예인들의 지지 움직임 등 탈북자 강제송환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 NGO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였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최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 주변국이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탈북자 문제로 촉발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 동향과 그 함의를 분석하기로 한다.

지난 3월 22일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발의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without a vote) 채택되었다. 현 인권이사회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2003년부터 채택하기 시작한 북한인권결의는 2006년 인권위원회를 인권이사회가 승계하면서 매년 표결과 토론에 의하여 채택되어 왔다. 올해의 경우, 결의안의 투표를 위해 그동안 표결 신청을 해왔던 쿠바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전통적으로 합의 채택 자체를 반대(block)해 오던 중국 및 러시아 등이 결의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표명(disassociate)에 그친 관계로, 인권결의는 무투표 합의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 북한인권결의가 이렇듯 투표 없이 채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실태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 강력한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의 내용은 지난 결의들에 비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결의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현재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고 grave), 광범위하며(widespread), 조직적(systematic)인 인권침해사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계속해서 결의는 2010년 6월 임명되어 활동 중인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고,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임무에 협조하지 않고, 방북을 불허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의에서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적 지원이 적절한 감시 하에 신속하고 장애 없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내용에 있어 별반 새로운 것이 없는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지만, 올해의 결의가 유독 중요한 점은 북한인권문제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보다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인권문제는 주권국가들의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파열음을 낼 뿐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더 무게를 뒀야 한다는 일부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여론은 이미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강조하는 추세는 비단 유엔 북한인권결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3월 28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하였다. 특히, 동 법안에서는 최근 부각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의 강력한 역할의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한편,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C)’도 4월 3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매년 1만 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하였으며, 총회나 이사회를 통한 북한 반인도범죄 ‘사실심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립을 촉구하였다. 이 밖에도 세계적 인권 NGO인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 엠네스티(AI) 등도 북한인권 상황의 반인도성에 주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연대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핵심적 이슈는 일련의 북한인권 개선 관련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통해 북한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전략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문제 관련,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상황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리비아, 시리아, 스리랑카의 경우에 적용되었던 ‘사실심사위원회’를 북한인권개선 방안 논의에 포함시켜 이를 북한에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하고, 현 UN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면, 북한도 이러한 추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만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의 무투표 채택, 미국의 북한인권법 5년 연장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난관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를 반대하고 북한인권결의의 채택을 서방 선진국의 기준으로 특정 국가를 압박하는 도구라고 비판하는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군포로 고(故) 백종규씨 가족의 한국행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개선운동 및 전략을 통해 주요 국가의 정책을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 통과 논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한다면, 여야의 입장 차이를 최소화하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어, 북한인권 개선의 국제적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11월 이레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경제분야 최고회의인 G-20, 2012년 안보분야 최고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 등 세계적 수준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인권 영역은 정치, 경제 이슈와 같이 국가들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아닌 인간 본연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근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했으므로, 이제 한국 정부도 북한인권의 보편성에 주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로 촉발된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북한 사회 전반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주요한 밑거름이 되도록 국가 차원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